

# Yeosu Web Contents

2024년 02월 25일 23시 11분



# 목차

<b>목차</b>	2
<b>검사/의무보험</b>	3
<b>의무보험</b>	3
<b>보험가입대상</b>	3
<b>의무보험</b>	3
<b>유의사항</b>	3
<b>의무보험 미가입 및 운행시 처벌</b>	4
<b>과태료와 관련하여 유의사항</b>	4
<b>의무보험 과태료 처분기준(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3항)</b>	4
<b>과태료 부과절차</b>	5
<b>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사항</b>	5
<b>운행금지위반 범칙금 및 형사 처벌</b>	5

자동차등록	건설기계등록	이륜차신고	과태료	취득 등록면허세
<b>검사/의무보험</b>	자동차등록현황	민원서식	자주하는 질문	오시는 길

- 자동차정기검사
- 건설기계정기검사
- **의무보험(대인/대물)**

## 의무보험

-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, 이륜차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만료일 전에 본인이 거래 또는 거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자동차보유자명으로 가입하면 됩니다.

## 보험가입대상

보험종목	가입대상
자가용	법정 정원10인승 이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
업무용	개인용 자가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
영업용	사업용자동차
이륜자동차	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
건설기계	덤프트럭, 콘크리트믹서트럭,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, 타이어식굴삭기,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

## 의무보험

담보종목	보상내용
대인배상 I	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
대인배상 II	자동차 사고로 대인배상 I 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
대물배상	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

## 유의사항

- 보험 만료일 전 30일, 10일까지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2회 통보합니다.(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)  
(<http://www.yeosu.go.kr>)

- 지연가입 및 미가입자를 보험개발원 통보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태료부과 또는 가입명령 합니다.
- 자가용 및 이륜자동차 : 대인배상 I , 대물배상 가입
- 영업용등 기타 : 대인배상 I , 대인배상 II 또는 책임공제, 대물배상
- 의무보험은 당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.
- 의무보험종료일 전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.
  - › 종료일이 2005년5월20일인 경우 5월20일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.
  - › 종료일이 공휴일, 연휴, 명절인 경우 휴무 전날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.
- 인적사항, 주소등이 변경되면 가입된 보험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(보험약관)
- 의견진술 : 과태료처분 전에 기회가 부여되며 의견진술은 의무이행을 하였음에도 행정상 오류 또는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 가능한 경우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하시면 심사 후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.
- 이의신청 : 과태료부과 금액 또는 사유등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청에 신청하여 야함(기간경과시 신청불가) 이의신청을 하시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고 법원에서 과태료를 결정부 과 처분하게 됩니다.

## 의무보험 미가입 및 운행시 처벌

- 과태료 - 의무보험 미가입은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질서벌 미가입자에게 부과합니다.
- 범칙금
  - › 범칙금은 금지범위반에 대한 행정형벌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와 별도로 부과하게 됩니다.
  - ›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조 운행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경미한 사항일 경우 범칙금을 부과합니다.
- 의무보험미가입 운행적발 사건처리 순서
  - › 경미한 경우 : 위반내용접수 → 사건내사 → 출두요구서 발송 → 심문조서작성 → 범칙금부과
  - › 사고발생, 2회이상운행 적발 : 위반내용접수 → 사건내사 → 출두요구서 발송 → 심문조서작성 → 지문채취 등록 → 검찰청에 사건송치 →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

## 과태료와 관련하여 유의사항

- 매매상사 직원 또는 판매사원이 매매상사에 입고하지 않고 보유하다 매매된 경우
- 보험계약시 분납신청하여 납부기간 경과시
- 장기간 미운행으로 방치한 경우
- 해외장기출장시 소유차량을 방치한 경우등  
(종료일이 공휴일, 연휴, 명절인 경우 휴무 전날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.)
- 차량번호, 인적사항, 주소등이 변경되면 가입된 보험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(보험약관)

## 의무보험 과태료 처분기준(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3항)

미가입 기간	이륜자동차		자가용자동차		사업용(건설기계포함)자동차		
	대인I	대물	대인I	대물	대인 I	대인 II	대물
10일 이내	6,000원	3,000원	10,000원	5,000원	30,000원	30,000원	5,000원
10일 초과 매1일마다	1,200원	600원	4,000원	2,000원	8,000원	8,000원	2,000원
최고금액	200,000	100,000	600,000	300,000	1,000,000	1,000,000원	300,000원

(<http://www.yeosu.go.kr>)

원	원	원	원	원	원	1,000,000원	500,000원
---	---	---	---	---	---	------------	----------

## 과태료 부과절차

- 보험자(30일전 통지)→보험회사(자료송출)→보험개발원→자료인수(여수시)→ 미(지연)가입자 진술기회부여(15일간)→고지서 발급(납기15일)→독송장발급(15일간)→ 최고장 압류예고(15일)→자동차에 압류

##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사항

-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대물보험 가입의 의무화(2005.2.22부터 시행) →사고 1건당 1천만원까지 보상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.
-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(2007.12.29 일 시행)

## 운행금지위반 범칙금 및 형사 처벌

구분	기간	금액
범칙행위자(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운행하다 1회 적발된 자동차 보유자)	사업용자동차 ▪ 승합자동차 ▪ 화물, 특수, 승용차, 건설기계	▪ 200만원 ▪ 100만원
	자가용자동차 ▪ 승합, 화물, 특수, 건설기계 ▪ 승용자동차	▪ 50만원 ▪ 40만원
검찰청 사건송치 (형사처벌 대상자)	▪ 가.미가입차량이 운행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▪ 나.의무보험 가입명령을 받고 2개월이내 미가입자 ▪ 다.범칙금 납부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의신청자 ▪ 라.출두요구서를 수령하고 불응자 ▪ 마.범칙행위자 행방불명 - 기소중지	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

# Yeosu Web Contents

